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67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이병진 · 박선원
차지호 · 이정문 · 정진욱
양부남 · 박정현 · 김한규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

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전기자전거</u> 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u>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자전거</u> ----- ----- -----.
② 누구든지 <u>전기자전거</u> 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자전거</u> ----- -----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u>자전거</u> ----- ----- -----.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u>전기자전거</u> 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 ----- <u>자전거</u> ----- ----- <u>자전거</u> ----- ----- -----.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제25조(과태료) ① ----- ----- <u>자전거</u> ----- ----- <u>자전거</u> ----- -----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